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 세무담당부서(장)

제 목 2021년 시행 지방세법 추가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「지방세법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본 내용은 우리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자료실 법령 제·개정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령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주요 시행내용

○ 지방세법 (2021.01.01. 시행)

① 납부의무자의 연세액 납부 시 기간별 공제금액 비율 조정 (법 제128조)

- 종전에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범위에서 10%를 공제를 해주던 것을, **10%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세액으로 신고납부**

연세액 신고납부기간	계 산 식
1월 16일부터 ~ 1월 31일까지	연세액 ×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/365(윤년의 경우에는 366) × *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3월 16일부터 ~ 3월 31일까지	
6월 16일부터 ~ 6월 30일까지	
9월 16일부터 ~ 9월 30일까지	제2기분 세액 ×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/184 × *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ex) 1월에 연세액 납부시 공제율 계산 : 334일 / 365일 × 10% = 9.15%

*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**

- 2021년 및 2022년 : 100분의 10
- 2023년 : 100분의 7
- 2024년 : 100분의 5
- 2025년 이후 : 100분의 3

※ 붙임 : 개정 지방세법 시행 안내(발췌) 1부. "끝"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수신자 : 회원사 전체

담당자	주임	부장	기획실장	상무	이사장
	박종우	김진석	박상광	성정현	최장순

시행 서자대조 21-4 (2021.01.05) 접수 - ( )

우 0670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(방배동, 프린스효령빌딩 2층) / www.scra.or.kr

전화 (02) 525-9076 전송 (02) 525-9063 / scra@scra.or.kr / 공개

[붙임]

개정 지방세법 시행 안내(발췌)

□ 지방세법

○ 납부의무자의 연세액 납부 시 공제금액 비율 조정 (법 제128조 3항)

- 주요내용 : 종전에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범위에서 10%를 공제를 해주었으나, **10%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.**

<신·구 대비표>

현 행	개 정
제128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·② (생 략)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(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)의 **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**	**제128조(납기와 징수방법)**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**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.**

<table>
<tr>
<td></td>
<td>
<table>
<tr><th>연세액
신고납부기간</th><th>계 산 식</th></tr>
<tr><td>1월 16일부터 ~
1월 31일까지</td><td rowspan="3">연세액 ×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/365(윤년의 경우에는 366) × *<u>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</u></td></tr>
<tr><td>3월 16일부터 ~
3월 31일까지</td></tr>
<tr><td>6월 16일부터 ~
6월 30일까지</td></tr>
<tr><td>9월 16일부터 ~
9월 30일까지</td><td>제2기분 세액 ×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/184 × *<u>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</u>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.</u></td>
<td>④ ----------<u>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.</u>
<table>
<tr><th>계 산 식</th></tr>
<tr><td>연세액 ×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/365(윤년의 경우에는 366) × *<u>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</u>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⑤ (생 략)</td>
<td>⑤ (현행과 같음)</td>
</tr>
</table>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**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**

2. <u>제128조제3항ㆍ제4항</u>,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,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: <u>2021년 1월 1일</u>